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 기능의 재검토

윤 석 완

전북대학교 교수

정부는 그동안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감량하고 행정사무의 혁신과 기업의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중앙과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지방행정 효율화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기능중심의 조직지향, 자치경영행정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효율화는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자치권의 강화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인·허가권의 지방이양으로 지방행정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은 행정조직을 축소시

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읍면동 기능 전환에 의한 행정업무 축소로 지방세정 또한 인력이 축소되고 조직구조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방세정 운영에 효율적일지는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세정기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1. 기능전환의 배경과 의미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전통적인 다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러한 검토는 산업화와 정보화 진전으로 지금까지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다단계 행정계층이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며, 행정처리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왔던 3~4단계의 지방행정 계층을 1단계 축소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시킴과 동시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일치로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은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말단 조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해결과 지역주민의 생활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임과 역할을 다해 왔다. 이러한 읍면동이 행정기능 축소라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인식 때문이다.

첫째 인구 밀집과 주거환경의 공동 주택화, 각종 민원 발급의 온라인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등으로 읍면동 행정업무가 상당 폭으로 감소되었다. 둘째 읍면동이 그동안 민원사무 보다는 시군구의 보조사무와 지시, 지침, 재위임 사무를 담당해 왔으며, 유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무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이 미흡했다. 셋째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읍면동의 사무인력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로 전통적인 읍면동 단위의 행정개념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행정기능 약화 요인에 반하여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수준 높은 복지 및 문화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한 주민의 자치의식 고취와 지역공동체 인식이 21세기 지방자치 토착화를 위한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읍면동 행정기능 약화와 사회환경의 변화 요인들은 결국 읍면동을 민원과 사회복지 그리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바꾸어 놓았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는 증명서 발급외의 대부분의 사무들이 시군구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사무들은 다수가 일반행정 사무들로서 주민들과는 직접 관련이 적으며 읍면동의 경유없이 본청에서 직접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무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무이관으로 읍면동과 시군구의 사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그동안의 중복행정이 개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전환 초기에는 시군구 본청 업무증가로 업무수행의 애로가 있어 오히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의 합리적 운영과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성이 적은 사무의 통폐합, 행정수행 방법의 개선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기능전환이 정착화되는 시점에서는 지방행정구조가 간소화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생산적인 구조로 전환되어 지방행정력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은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기능외태분야 폐지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

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방행정계층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 2.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무조직과 세정 변화

읍면동은 기능전환 전까지 기관유지사무, 민원사무, 일반행정, 타기관 협조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사무 중에서 읍면동장이 원처리권자인 사무비율은 동과 면의 경우 98년 대체로 32%와 42%이었으며 위임처리 사무는 68%와 58% 이었다. 그러나 기능전환 후에는 이러한 사무의 대부분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고 제증명 발급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되게 되었다. 이관된 업무는 본청의 실과소에 재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이관후에 폐지, 민간위탁, 타기관 이관등의 업무로 분류되어 업무개선이 추진되었다. 바꾸어 표현하면

읍면동은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성 업무만을 수행하고 규제단속과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어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지방세정 업무가 크게 변화되었다. 읍면동 기능전환 전에 시군구의 세무관련 부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읍면동은 조례에 의한 위임업무와 시군구 본청의 협조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는 납세증명 업무 외에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었다. 읍면동 존치와 본청에 이관된 세무업무 내용은 <표 1>과 같다.

읍면동의 세무업무 이관은 세무인력 감축과 구조를 변화시켰다. <표 2>에서 보면 지방세에 관련된 일반직, 세무직, 전산직, 기능직을 포함한 인원과 세무직 인원이 읍면동 기능의 전환이 시작된 1999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면 각각 10%와 3.8%가 감

<표1> 지방세정의 업무변화

구분	기능전환 전	기능전환 후
읍면동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징수 및 납세고지서 송달.</li> <li>과세자료 기초조사 및 자료정비 관리</li> <li>지방세증명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명서 발급</li> </ul>
시군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정 종합기획</li> <li>읍면동 지방세 과징업무지도</li> <li>납세자 민원창구 개설 및 민원상담</li> <li>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li> <li>시군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정 종합</li> <li>읍면동 지방세 과징업무지도·민원창구 개설 및 민원상담·지방세징수 및 납세고지서 송달</li> <li>과세자료 기초조사 및 자료정비관리</li> <li>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운영</li> <li>시군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 처리</li> </ul>

자료 : 행정자치부

소되었다. 그러나 전체인력에 대한 세무직 인원의 비중은 83.3%에서 89.3%로 오히려 증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무 행정 능력 배양과 세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담당부서 6급이하 공무원을 세무직렬로 충원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세무업무의 시군구 분청 이관에 따라 지방세 담당 정원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 폭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시군구 분청의 세무 인원은 읍면동 인원이 분청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분청의 세무관련 주무부서는 확대 내지 개편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구조 조정은 분청의 세무업무 증대와 인력구조 확대를 통하여 시군구의 세정기능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지방세 공무원과 세무직 인원

(단위 : 인,%)

구 분	담당 공무원(A)	세무직(B)	B/A
'01.10	11,695	10,447	89.3
'00	12,295	10,491	85.3
'99	12,999	10,852	83.4
'98	13,504	10,634	78.7

자료 : 행정자치부

### 3. 검토되어야 할 기능전환의 세정기능

지방세 제도가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재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지방세정의 효율화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계와 납세자 편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는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규정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는 세수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징수할 때 최대 수입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데 가장 편리한 방법과 시기는 그만큼 징세 노력을 감소시켜 징세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반면에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납세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방세정 효율성은 부과·징수체계의 효율화를 기반으로 납세편의가 보장될 때에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자.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지방세무 행정조직은 전체적으로 동일 업무에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은 다양하다. 시와 구의 세무조직은 부과, 징수, 세정, 세무조사, 세입관리, 세정, 세외수입 등으로 자치단체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4개에서 6개의 과나 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일부의 시에서는 유사 세목별로 구분하여 도세, 시세, 재산세, 징수, 세무조사, 세입관리 등의 업무를 과나 계의 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은 시와 유사하나 조직내에 경리계와 재산관리계를 두고 있는 것이 시의 경우와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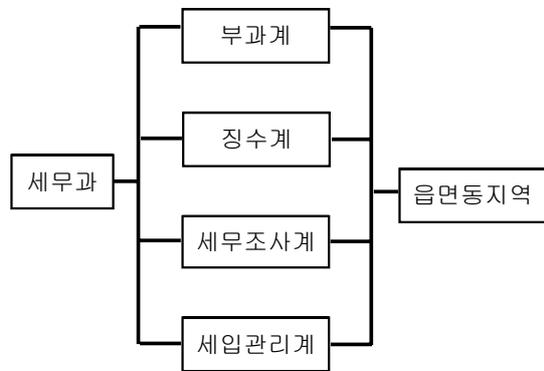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세무조직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무과로 하고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입관리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정한다.

부과계는 부과행정의 일반사무, 지방세의 부과조정, 과표조정에 따른 시가 조사결정, 기타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징수계는 징수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시책개발, 납세홍보 및 징수독려, 지방세 체납징수 및 처분, 압류물건 공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계는 지방세 전반의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업무,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조사 등을 하며 세입관리계는 시의 자금관리와 세입의 일일결산을 담당한다.

세무업무는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시군구의 관리와 감독하에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혹은 협조아래서 그 기능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은 행정상 동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나 세정업무는 시군구 본청의 관리와 감독 그리고 지원아래 수행했다. 따라서 읍면동의 세무업무는 시군구 본청의 세무업무를 지역별로 나누어 수행하는 지역별 세무조직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읍면동의 세무업무는 시군구의 지역별 하부 조직의

역할을 대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기 전에 있어서 시군구 세정업무는 본청의 기능 내지 세목별 조직과 읍면동의 지역별 조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앞에서 상정한 세무조직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세무조직도



읍면동 기능이 전환된 후에는 읍면동의 세무업무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담당인력도 축소되어 본청으로 이전 재배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본청 외곽에 존재하던 시군구의 지역별 세무조직이 축소·조정되어 본청내로 이전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군구의 세무조직은 읍면동 기능전환전과 유사한 지역별 조직이 혼합된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변화는 지금까지 본청의 기능별 특성과 지역별 세무조직이 연결되어 운영된 혼합 세무조직의 특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본청내의 지역별 세무조직의 배치는 최 일선 세무업무의 집행과 실행기능 강화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지역별 세무조직이 본청 외부인 읍면동에 있을 때에는 본청은 이러한 집행과 실행기능 외에 세무행정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업무 치중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별 세무업무의 본청 내부화로 인하여 업무가 이러한 기능보다 지역별 업무에 치중하기 쉽다. 이러한 탓으로 시군구 세무행정의 장단기적인 계획과 기획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읍면동 세무담당 인원 축소와 본청 흡수로 인하여 본청의 세무 담당 인원은 종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서 과 신설은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시군구의 세무조직은 정원이 40~50명에 달하는 대과로 편제되었다.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는 관리범위의 지나친 광역화로 인하여 주무 부서장의 업무장악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대과주의의 세무조직에 의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지방세정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건수와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질 높은 세무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무행정 인력이 확충되고 전문화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세무행정의 전산화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세무업무의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세무인력이 상당 폭으로 감축되었다. 이러한 탓으로 시군구 본청내의 읍면동 지역별 세무담당 인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세무인력 감축은 세무업무의 복수직이 증대되는 유인이 된다. 복수직의 증대는 세무업무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청의 읍면동 담당 세무인력 축소는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관계를 종합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조직의 변화는 외적 과 규모와 내적 과소규모로 인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읍면동 세무인력의 본청 이동은 상위 직급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표 3>에 의하면 지방세무직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시작된 99년과 완료된 2001년을 비교해 볼 때에 정원과 현원의 감소비율이 9급의 경우 각각 13.8%와

<표 4> 지방세무직 정원

(단위 : 인,%)

구분	지방세무직 정원현황				
	계	6급	7급	8급	9급
'01.10	10,447 (100)	2,195 (21.0)	2,832 (27.1)	3,454 (33.1)	1,966 (18.8)
'00.10	10,491 (100)	2,135 (20.4)	2,906 (27.6)	3,315 (31.6)	2,135 (20.4)
'99.10	10,852 (100)	2,300 (21.2)	3,034 (28.1)	3,226 (29.7)	2,282 (21.0)
'98.10	10,634 (100)	2,140 (20.1)	2,917 (27.4)	3,225 (30.3)	2,352 (22.2)

자료 : 행정자치부

<표 5> 지방세무직 총원율

(단위 : 인, %)

구분	지방세무직 현원현황					총원율
	계	6급	7급	8급	9급	
'01.10	8,399 (100)	1,094 (13.0)	1,977 (23.5)	3,954 (47.1)	1,374 (16.4)	80.4
'00.10	8,518 (100)	1,069 (12.5)	1,847 (21.7)	3,416 (40.1)	2,186 (25.7)	81.2
'99.10	8,787 (100)	1,099 (12.5)	1,811 (20.6)	2,967 (33.8)	2,890 (32.9)	81.0
'98.10	8,835 (100)	1,018 (11.5)	1,651 (18.7)	2,639 (29.9)	3,572 (40.4)	83.1

자료 : 행정자치부

61.5%로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상위직급인 6급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4.6%, 0.5%로 소폭 감소되었으며 8급은 7.1%와 33%가 증가했다. 따라서 지방세무인력 감소는 승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하위 직급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세무인력에 각 직급이 점유하는 구성비는 다른 직급은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9급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3%와 16.5%가 감소되었다. 총원율은 2001년 전체 80.4%로 8급은 정원을 14% 초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급은 전체 총원율에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세무조직은 향후 신규 세무인력 확보와 기존인력의 상위직급 이동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세무인력의 상위직급 적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읍면동은 기능이 전환되기 전 부과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와 체납세 징수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납세 증명서 발부 기능만 하고 다른 관련된 기능은 시군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본청이 직접 고지서 송달과 징수 및 체납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 최고서 등의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의 교부는 통장과 이장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현재 대략 우편의 비중은 35%이고 교부는 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와 방법은 지방세 관련업무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된 현재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교부업무는 통장과 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관계로 통장, 이장 등과 유대관계가 적어 교부에 의한 고지서 송달이 종전과 같이 용이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징수와 독려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향후 고지서 송달은 교부보다는 우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상은 읍면동에서 2~3명이 수행했던 업무를 본청 내에 1~2명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축소·조정된 데에서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송달은 간편하나 비용이 문제다. 일부 세목의 경우 송달비용에 비해 세액이 적고 우편반송이 많아 세입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송달문제는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였다.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부의 경우 송달료 지급과 세액이 적은 경우 일반우편에 의한 고지서 도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이용되더라도 종전에 비해 송달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송달료 추가와 우편증가에 따른 반송율이 상당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에 지방세무 업무의 시군구 본청 이관으로 송달비용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쉽다.

지방세는 주로 재산에 관련된 세가 많다. 이러한 지방세 중에서 인허가시 등록대장에 의존하는 세목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부과시 현황과세원칙 즉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현황에 의거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세목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세목들은 수시로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과세물건의 가치와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목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매년 실태 파악과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이러한 실태파악은 본청과 읍면동 세무관련 공무원이 통장과 이장의 도움을 받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능이 전환된 현재에는 담당 인원이 축소되고 본청 상주로 인하여 지역에 대한 밀착조사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정밀 조사와 분석이 어렵고, 또한 통장, 이장과의 유대관계가 소원해져 과세자료조사시 협조를 얻는 데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과세자료조사는 부실해 질 소지가 충분하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시군구 본청에서 전반적인 납세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무업무를 위해 지역주민은 시군구 본청을 방문해야 한다. 납세업무가 본청 한 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읍면동과 본청 두 곳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정은 본청이 읍면동사무소 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친밀성이 떨어져, 납세문제가 발생될 때에 납세자의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이 예전보다 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상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읍면동의 세정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단순하게 조직축소 형태로 시군구 본청내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방세정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본청내의 흡수보다는 차라리 읍면동 세무인력을 본청의 하부조직으로 전문화하여 지역내에 존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는 읍면동 행정구역과 일부 사무의 읍면동내 존치 그리고 읍면동장의 행정적 지위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에도 있다.

행정의 효율성은 지방지출 효율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단위당 최저비용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행정 비용은 중복행정 배제, 지역내 행정의 통일성,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최저 비용의 행정서비스는 경비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선호에 반드시 합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행정서비스가 주민선호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의 감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비용이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의 최적공급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 양자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경비의 단위당 지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시군구의 세무조직이 본래 갖고 있는 읍면동 세정업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읍면동 조직 즉 지역별 조직을 축소하여 흡수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은 가시적이며 단순한 인력 규모와 조직 축소라는 형태로는 달성될 수 없다. 진정한 조직의 구조조정에 의한 효율성 제고

는 인력과 계층의 다소문제 보다는 전문화된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 운영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조직 기능의 변화가 과연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검토 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대영외 1인 :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2. 우명동, 지방재정론, 해남, 2001.
3. 원윤희, “지방세 부과·징수의 행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4. 행정자치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2000.
5. \_\_\_\_\_, 지방세무조직 및 인력현황, 2001.
6. 林宣嗣, 地方新時代わ創る税・財政システム, きょうせい, 1997, 9.

